통영시 공고 제2026-2149호

시민 중심, 강한 통영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어업구조 전환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2. 사업기간: 2027. 1. ~ 12.
3. 신청기간: **2026. 11. 16.(월) ~ 12. 11. (금)**
4. 신청대상: 면허·허가어업을 득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5. 신청조건: 관련 법에 따라 정하는 준수의무* 이행
   * 기본의무(TAC) 1개 이행/선택의무(휴어 등) 2개 이행, 세부 붙임 참조
6. 사업내용: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7. 지급조건
   가.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나.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8. 제출서류: **선정신청서 등 공고문 P.3 신청 방법 참조**
9. 접 수 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055-650-5063)

2026년 11월 13일

통 영 시 장

1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구 분	근해어선	연안어선	비 고
단체구성요건	**5척 이상**	**10척 이상**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혼합 구성 불가

※ 직불금 신청자 전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선정 결과를 거친 이후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지급

❑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

○ 「수산업법」 제7조 ·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 · 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준수의무 주요 사항** (세부 붙임 참조)

구 분	근해어업	연안어업
기본의무 (35점) 필수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선택의무 (50점) 2개이상선택	①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25점)** 설정기간 내 전면 조업 중단 ②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20점)** 관련 앱 활용하여 조업상황 보고 ③ **(그 밖의 의무/20점)**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된 어구 제한, 강화된 체장·체중제한, 종자방류, 어구보증금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기타 준수 의무	

- 기본의무는 신청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선택의무는 구성원 80% 이상이 참여해야 함. (단, 선택의무의 '어획증명'은 구성원 50% 이상 참여 시 인정)
- 선택의무 중 (즉, 1·2·3번 중 선택할 것)
-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간주

❑ 지원제외대상

○ **(감척대상 어선)** 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 신청서 제출 이후 감척대상 포함 구성원(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자 등)**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때 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그 외 보조금 부정수령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1. 16.(월) ~ 12. 11.(금)

❑ 접 수 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 055-650-5063)

❑ 구비서류 ※ 단체에서 신청할 시 단체신청서 1부, 개인별 단체구성원신청서 함께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단 체 (협회, 조합, 어촌계 등)	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신청한 기본/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의내용을 반드시 포함
단 체 구성원 (개인)	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청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②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③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각 1부 ④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⑤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본인명의) ⑥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 수산물 위판실적,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3 지급 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요청하면 직불금 신청(지급) 자격 등에 부합하고 준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인정

❑ 직불금 신청년도에 어업인 등이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7. 9. 30.)까지 이행할 것**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7.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 조업일수 **산정기간('26. 10. 1. ~ '27. 9. 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만 조업하는 신청단체의 경우에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4 평가 총괄표

<table>
<tr><th>구분</th><th>준수 의무</th><th>배점</th><th colspan="4">평가 지표</th><th>점수</th></tr>
<tr><td rowspan="5">기본 의무</td><td rowspan="5">총허용어획량 준수[1]</td><td rowspan="5">35</td><td rowspan="5">TAC 적용율 (35)</td><td colspan="3">5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90% 이상 TAC 관리</td><td>35</td></tr>
<tr><td colspan="3">4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80% 이상 TAC 관리</td><td>30</td></tr>
<tr><td colspan="3">3개 어종 이상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70% 이상 TAC 관리</td><td>25</td></tr>
<tr><td colspan="3">2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50% 이상 TAC 관리</td><td>20</td></tr>
<tr><td colspan="3">1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30% 이상 TAC 관리</td><td>15</td></tr>
<tr><td rowspan="14">선택 의무</td><td rowspan="8">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2]
*해당 기간 전면 조업 중단
*특정 지역 조업 중단은 불인정</td><td rowspan="8">25</td><td rowspan="2">참여율 (5)</td><td colspan="3">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td><td>5</td></tr>
<tr><td colspan="3">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td><td>3</td></tr>
<tr><td rowspan="6">중단 기간 (20)</td><td></td><td>금어기와 연속(20)</td><td>금어기와 별도(10)</td></tr>
<tr><td>연속 60일 이상</td><td>20</td><td>10</td></tr>
<tr><td>연속 50일 이상 60일 미만</td><td>18</td><td>8</td></tr>
<tr><td>연속 40일 이상 50일 미만</td><td>16</td><td>6</td></tr>
<tr><td>연속 30일 이상 40일 미만</td><td>14</td><td>4</td></tr>
<tr><td>연속 15일 이상 30일 미만</td><td>12</td><td>2</td></tr>
<tr><td rowspan="6">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td><td rowspan="6">20</td><td rowspan="6">참여율 (20)</td><td colspan="3">참여 구성원의 전원 참여</td><td>20</td></tr>
<tr><td colspan="3">참여 구성원의 90% 이상 100% 미만 참여</td><td>18</td></tr>
<tr><td colspan="3">참여 구성원의 80% 이상 90% 미만 참여</td><td>16</td></tr>
<tr><td colspan="3">참여 구성원의 70% 이상 80% 미만 참여</td><td>14</td></tr>
<tr><td colspan="3">참여 구성원의 60% 이상 70% 미만 참여</td><td>12</td></tr>
<tr><td colspan="3">참여 구성원의 50% 이상 60% 미만 참여</td><td>10</td></tr>
<tr><td colspan="2">그 밖의 의무</td><td>20</td><td colspan="5">최대 3개 항목 신청 가능(단, 20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td></tr>
<tr><td rowspan="3">해양쓰레기 수거[4]</td><td rowspan="3">10</td><td rowspan="2">참여율 (5)</td><td colspan="3">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td><td>5</td></tr>
<tr><td colspan="3">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td><td>3</td></tr>
<tr><td rowspan="3">수거량 (5)</td><td>근해어업</td><td colspan="2">연안어업</td><td></td></tr>
<tr><td>척당 3.5톤 이상</td><td colspan="2">척당 200kg 이상</td><td>5</td></tr>
<tr><td>척당 2톤 이상 3.5톤 미만</td><td colspan="2">척당 100kg 이상 200kg 미만</td><td>4</td></tr>
<tr><td></td><td></td><td>척당 1톤 이상 2톤 미만</td><td colspan="2">척당 50kg 이상 100kg 미만</td><td>3</td></tr>
<tr><td>강화된 어구 제한[5]</td><td>10</td><td colspan="4">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td><td>10</td></tr>
<tr><td></td><td></td><td colspan="4">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td><td>8</td></tr>
<tr><td>강화된 체장·체중 제한[5]</td><td>10</td><td colspan="4">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td><td>10</td></tr>
<tr><td></td><td></td><td colspan="4">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td><td>8</td></tr>
<tr><td>종자방류[6]</td><td>5</td><td colspan="4">종자방류 여부</td><td>5</td></tr>
<tr><td rowspan="4">기타 준수 의무 (4개 의무 중 1개 의무 선택)</td><td rowspan="4">5</td><td colspan="4">어구보증금제 이행[7]</td><td>5</td></tr>
<tr><td colspan="4">생분해성 어구 사용</td><td>5</td></tr>
<tr><td colspan="4">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8]</td><td>5</td></tr>
<tr><td colspan="4">기타 준수 의무(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td><td>5</td></tr>
<tr><td>감점[9] (신설)</td><td>의무 불이행으로 직불금을 수급하지 못한 경우 (중도포기 포함)</td><td>-10</td><td colspan="4">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1인당)
* 단체에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 감점</td><td>-3</td></tr>
<tr><td colspan="4">단체 전원 포기</td><td>-10</td></tr>
</table>

1) 전체 어획량에 대해 TAC 시범을 실시하는 경우 TAC 대상 어종을 1개로 적용
2)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적용시, 대상어종이 금어기가 없는 경우에는 "금어기와 별도" 기준 적용
3)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강화된 체장·체중 제한 적용시 TAC 참여어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어획종(1종)"에만 적용
4) 근해어선 중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연안어업 해양쓰레기 수거항목 평가기준 적용
5)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에 제시된 제한 의무보다 강화된 의무 계획만 인정
6) 「해양수산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종과 시기만 인정
7)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 업종만 인정

5 지급 기준

❑ **지급기준**: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어선 톤수 2톤이하)** 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어선 톤수 2톤초과)** 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

< 2톤 초과 시,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 **지급 유의사항**

○ 어업면허·허가 등의 종류에 따라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경우(선단조업)는 1척(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본선 이외의 부속선 등은 어선의 톤수 합 중 100분의 10만큼 총톤수로 추가 인정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 2척의 어선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허가받은 어선 중 직접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 1척의 톤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외 어선은 부속선으로 보아서 추가 인정

○ 지급상한톤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6 지급 방법

❑ **지급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은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일정액(150만원) 지급하고, 그 외의 어선은 톤수별 차등 지급

❑ **지급시기(절차)**

○ 지급대상자 선정(1월~2월) → 이행점검(2~9월) → 직불금 지급(12월~1월)

7 부정수급자 조치

❑ 지급제한

○ **(개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제한)**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까지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7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 미지급, 2차 위반 시 20% 미지급, 3차 이상 위반 시 40% 미지급	
8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단체 구성원의 직불금 지급 제한)** 어업관리단의 지급신청단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 단체가 제출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대비 구성원들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여 본래의 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 **(일부제한)** 전체 구성원 중 20%이상 50% 미만이 부적격 판정시, 직불금을 받을 각 구성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동 지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전부제한)** 전체 구성원 중 50%이상이 직불금 지급 부적격 판정시 대상 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직불금 미지급
- **(중도포기)**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 선정 통보 이후에 중도에 포기하는 구성원은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으로 간주

< 직불금 지급 미지급(감액) 비율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은 '올림' 처리하고 상위 비율은 '버림' 처리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전액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 [별지 제2호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 [별지 제3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 [별지 제4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table>
<tr><td colspan="2">신청업종, 단체인원
/ 참여인원</td><td colspan="2">신청업종 :
단체인원 : 명</td><td colspan="2">참여인원 : 명
참여어선수 : 척</td></tr>
<tr><td rowspan="2">단체</td><td>단체명</td><td colspan="4"></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표
연락처</td><td>사무실</td><td colspan="2"></td><td>팩스</td><td></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td></tr>
<tr><td colspan="6">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

2026. 00. 00.(제출일)

(단체명)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어업인수)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갈치(70%), 오징어(20%), 기타(10%)
근해연승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 주요 어획어종은 신청단체의 구성원의 주요어획어종을 표기하되, 어획어종별 어획량 비중을 ( ) 내에 백분율(%)로 표기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1. 필수의무 (작성 예시)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 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6.7~'27.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1) TAC 어종 개수 : '26.7~'27.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50% 이상 적용하는 어종만 적합성 평가 시 인정. TAC 어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2) TAC 관리 비율 : '25.7~'26.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 중 TAC 어종 어획량(TAC 소진량) 비율.

-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은 '25.7.1~'26.6.30 수협위판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신청단체 구성원의 TAC 소진량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확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2. 선택의무 (작성 예시)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td><td>참여어선 수</td><td>조업중단 기간</td><td>증빙 자료</td></tr>
<tr><td>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27.6.1 ~ 6.30(30일)
(해당기간 전면 조업중단)</td><td>출입항기록</td></tr>
<tr><td colspan="2" rowspan="2">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td><td>참여어선 수</td><td><이행할 내용, 기간 등></td><td>증빙 자료</td></tr>
<tr><td>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td><td>해수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보고된 어획실적</td></tr>
<tr><td rowspan="8">그 밖의 의무</td><td colspan="2"><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td><td><이행할 내용, 기간 등></td><td><증빙 자료></td></tr>
<tr><td colspan="2">해양쓰레기 수거
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근해)총 00톤(척당 00톤)
'27.1.1 ~ 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7.1.1 ~ 9.30</td><td>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td></tr>
<tr><td colspan="2">강화된 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7.1.1 ~ 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7.1.1 ~ 9.30</td><td>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td></tr>
<tr><td colspan="2">강화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td><td>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td></tr>
<tr><td colspan="2">종자방류</td><td>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7.6</td><td>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td></tr>
<tr><td rowspan="4">기타
준수
의무</td><td>어구보증금제 이행</td><td>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td><td>보증금 지급 현황 등</td></tr>
<tr><td>생분해성 어구 사용</td><td>조기자망, 대게통발 등</td><td>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또는
생분해 어구 구매 계약서
(생분해 성능 인증서 포함)</td></tr>
<tr><td>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td><td>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td><td>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td></tr>
<tr><td>기타준수의무</td><td>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td><td>해당 증빙 자료</td></tr>
</table>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하되, 선택의무별로 단체 구성원수의 4/5이상 참여해야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3 참여 어업인 명단(TAC)

OO도	신청자		허가			어선			TAC 할당량	
시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선명	번호	톤수	어종	할당량(톤)
	홍길동	-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동진*	*0000*	*25.7*	*대문어*	*2,000*

4 참고서식

<table>
<tr><td colspan="4">총허용어획량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td></tr>
<tr><td colspan="4">단체명 :</td></tr>
<tr><td>대표자 성명</td><td></td><td>참여
구성원수</td><td></td></tr>
<tr><td>사무실 주소</td><td></td><td>대표자
연락처</td><td>(사무실)
(핸드폰)</td></tr>
<tr><td colspan="4">상기 단체는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며, 단체의 참여 구성원 전원은 필수 지급요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에 대한 이행점검을 받을 때 확인 및 증빙서류로서 개인(업체) 간 사매매 자료가 아닌 (　　수협) 위판기록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개인(업체)간 사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 (인) * 구성원 전원 서명 필요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되며, 적합성 평가 관련으로, 수산정보통합시스템(어선 조업보고 정보, 어선 위탁판매 정보)에서 요청한 수협 위판기록 외 추가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td></tr>
</table>

* 필수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확인 및 증빙서류를 ‘수협위판기록’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제출

총허용어획량 개인(업체) 간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 간 매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허가(면허,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그 외(「상법」 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허가(면허,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면허,신고) 기간	포획물·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지급요건(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점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 ”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면허·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면허·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 ”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7. ”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 참여단체명 : ○○○협회, 단체, 조합 등

1. 필수의무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 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6.7～'27.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2. 선택의무

구분	의무 내용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주요어획 어종 및 전면 조업중단 기간		출입항기록
	오징어 '27.2.1.～'27.2.28.(28일)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 □ 가입예정 (접수불가) ■ 가입완료		해수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보고된 어획실적 (ID: MOF123123)
그 밖의 의무	< 이행할 의무 >	< 이행할 내용, 기간 등 >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근해)총 00톤(척당 00톤) '27.1.1～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7.1.1～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
	강화된 어구 제한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7.1.1～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7.1.1～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7.5월
	강화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채포 금지 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7.5월
	종자방류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7.5월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를 선택할 경우 이행점검 계획서 작성시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하여 제출